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1,184,112,807	35,523,384
일반회계	960,394,335	28,811,830
특별회계	223,718,472	6,711,554
공기업특별회계	140,662,844	4,219,8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 167, 909	2,195,03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47,200	43,41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047,735	1,981,432
기타특별회계	83,055,628	2,491,669
주택사업특별회계	73,996	2,22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770,200	203, 106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71,349	2, 140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464,070	133,92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1,487,953	1,544,639
지하수특별회계	1,900,083	57,00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58,780	73,76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19,930	147,598
수질개선특별회계	10,408,418	312,253
기반시설특별회계	500,849	15,025

제 2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39,334천원으로 한다.